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512호

「근거리 전용통신(DSRC)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(ETCS)의 정보교환 기술기준(노변-단말간)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국토교통부 장관

「근거리 전용통신(DSRC)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(ETCS)의 정보교환 기술기준(노변-단말간)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가.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안정적인 확산과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단말제조사 및 운영기관 간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리 전용통신(DSRC)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(ETCS)의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기술기준에 참조된 KS 표준 폐지 사항 반영 등 참조된 KS 표준의 최신화 반영 [안 제6호~제7호, 부록 A, B]
- 나. 기관코드 속성값 등 현재 전자요금징수체계 운영현황을 고려하고, 실제 ETCS 운영을 담당하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세부 속성값을 관리하여 정부 정책 변화 및 산업계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[안 제7호, 부록 B]
- 다. 정보세항목 등 용어 및 문구를 통일하여 명확히 하고, 띄어쓰기 및 외래어 표기를 포함한 일부 오기 표현 수정 [안 제1호~제7호, 부록 A, B]

3. 의견제출

- 「근거리 전용통신(DSRC)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(ETCS)의 정보교환 기술기준(노변-단말간)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디지털도로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사유(검토의견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657호
국토교통부 도로국 디지털도로팀
- 전화번호 : 044-201-3928 / 팩스번호 : 044-201-5588
- 이메일 : upjang80@korea.kr